



제 438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 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58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탁 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3.

다. 회 부 일 : 2026.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

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위탁 업무 수행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개정안은 치유농업법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치유농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①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창업 지원,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관리, ③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업무 등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¹⁾.

이 중 국가전문자격시험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관리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은 응시자·신청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정성·청렴성이 요구됨.

시험문제·출제위원 정보 및 응시자 개인정보의 유출(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관련), 채점·현장실사 결과의 조작 및 그 대가로서의 금품수수(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관련) 등 부정개입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임.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이에 개정안은 동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²⁾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³⁾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
·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
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⁴⁾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법제기준과 실제(‘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P 750

- 개별 법률에서 위탁·대행·지정 등을 통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법률에 구체적인 대상기관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사무 수행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한 유사 입법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임직원에 대한 기존 공무원 의제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시행·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53조⁵⁾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이미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의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지정해제에 따라 그 지위가 변동⁶⁾될 수 있으며, 현행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다른 관련 법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수탁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사무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⁷⁾.

둘째,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위탁근거 조항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의제 대상과 적용 업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위탁 근거조항인 제18조제2항은 위탁 대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8조의2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어 두 조문 간 위탁 대상에 대한 용어가 일치하지 아니함.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7) 법제기준과 실례(‘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P 749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지정해제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설립 근거를 신설할 때 공공기관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해당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임에도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u>관련 법인·단체에</u> 재위임 또는 <u>위탁할 수 있다.</u> <u><신설></u>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따라서, 위탁 근거조항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안 제18조의2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27. 2. 28.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07호는 제8조의2⁸⁾를 신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07호(2026. 2. 27., 일부개정), 시행 2027. 2. 28]
제8조의2(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확산
 2.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3.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운영을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치유농업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는 제18조의 일반 위탁근거와 별개의 개별 위탁근거이므로, 안 제18조의2가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만을 규정하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 운영업무는 포섭되지 않음.

따라서,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업무까지 의제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같이 위탁근거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공무원 의제는 공적 위탁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탁기관 임직원의 모든 고유업무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어촌·어항법」
제5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u>그 업무에 관하여</u>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은 <u>그 업무에 관하여</u>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u><신설></u>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8조의2 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셋째, 수정의견과 같이 시행예정인 법률 제21407호 제8조의2제2항을 위탁근거로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 부칙 시행일을 법률 제21407호의 시행일과 정합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21407호 제8조의2제2항은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인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이므로, 이 법의 시행일이 그보다 앞서는 경우

신설되는 안 제18조의2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조문을 인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① 이 법의 부칙 시행일을 2027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로 정하거나, ② 그 전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 단서를 두어 안 제18조의2 중 제8조의2제2항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을 2027년 2월 28일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⁹⁾.

9) 법제기준과 실제(‘24. 5. 국회사무처 법제실) P 162~163

-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거나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함.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을 그 시행일보다 먼저 시행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포 순서와 시행 순서가 뒤바뀌어 흡수개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개정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시행일을 달리하여 규정함.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⁰⁾.

10)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26
